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43
----------	------

2013년 7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5월 28일, 주찬식 의원(찬성의원 12명)
- 나. 회부일자 : 2013년 5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7월 1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찬식 의원)

### 가. 제안 이유

- 서울시가 공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정책 변경이나 민원 등에 의해 당해 공사계약과 별개의 공종·공법 또는 시설물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응당 공개발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계변경이라는 명목 하에 기존 계약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계약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 계약 체결 전에 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계약체결 방법 등)를 거치도록 하여 예산절감과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나. 주요 내용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계약”을 포함함(안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결과(2013.6.4 ~ 6.12) 제출의견 없음.



이는 기존 시공사들에게 특혜를 줄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바 있어, 본 개정안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기존 계약건과 별개의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새로운 공종이나 시설물을 추가 하기 위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한 심의를 선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업체에 대한 특혜성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발의되었다고 보여짐.

※ 건설위원회의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 당시 신청사건립공사의 경우 턴키업체와의 당초 계약에는 본관동(옛청사) 리모델링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사 중에 550억원 규모의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가 추가되면서 분리발주가 가능함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기존 턴키업체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주었으며, 중량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도 동 사업과 전혀 별건의 공사비 263억원에 달하는 “중량천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를 공개발주하지 않고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인 기존 턴키업체에게 설계변경을 통해 수의계약 형태로 주었다는 점이 지적된바 있음.

- 최근 3년간 준공처리된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건수는 161건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 증가는 3,705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정책변경이나 민원 등에 의해 해당 공사계약과 별개의 공종·공법 또는 시설물이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분리발주가 가능할 경우 설계변경 계약 체결 전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발주 등을 통한 예산절감과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최근 3년간(2010~2012)까지 준공처리된 발주공사중 설계변경 건수〉

(단위 : 건수, 백만원)

공사규모	총 공사 건수	총 계약금액		설계변경 횟수별 총 건수					설계변경 총 금액	설계변경 횟수	
		최초	최종	계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1회 5억원 이상	1회 10억원 이상
계	161	2,467,597	2,838,048	161	45	65	41	10	370,451		
20억원이상-100억원 미만	123	449,093	504,979	123	40	55	27	1	55,886	39	
100억원 이상	38	2,018,504	2,333,069	38	5	10	14	9	314,566		47

- 자료 : 박태규 의원 요구 제출자료(2013. 6.10)

- 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58.8건 심의를 위해 8~9회 정도 개최되어 왔는바, 본 개정안에 따라 심의 안건은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임.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

구 분		합계	평균	2009	2010	2011	2012
개 최 회 수		33회	8.3회	8회	8회	8회	9회
심의 안건	계	235건	58.8건	54건	44건	74건	63건
	공 사	30건	7.5건	8건	8건	6건	8건
	용 역	64건	16건	7건	6건	25건	26건
	물 품	12건	3건	3건	2건	4건	3건
	부정당제재	129건	32.3건	36건	28건	39건	26건
심의 결과	계	235건	58.8건	54건	44건	74건	63건
	원안의결	156건	39건	29건	33건	55건	39건
	수정가결	61건	15.3건	24건	9건	17건	11건
	기타 (사면 등)	18건	4.5건	1건 (재심의)	2건 (보류)	2건 (보류1, 부결1)	13건 (보류3, 조건부 10)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시행령 제108조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관련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 제고)과 효과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대해서는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령 위반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1.9.15>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만, 개정 조문내용 중 ‘당해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이 포함될 경우 사업부서의 자의적인 판단(분리발주가 가능하지 않다는)으로 심사에 누락될 소지가 있는바, 심의건수가 많지 않다면 자의성을 배재하여 30억원 이상의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분리발주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판단하여 공개발주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여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의 단서조항인 심의제외대상과 불일치 상태로 존치되어 왔던 동 조례 제2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보완하여 시행령과 일치시켜 법령상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단서조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

- 조례 제2조제1항 단서조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내용과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계약심의 대상 중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함 (안 제2조제1항 단서).

**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43
----------	------------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12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내용과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계약심의 대상 중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함 (안 제2조제1항 단서).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입법예고 결과(2013.6.4 ~ 6.12) 제출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u>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및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u>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p> <p>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 5. (생략)                  ② ~ ③ (생략)</p>	<p>제2조(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u>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u>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p> <p>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 5. (생략)                  ② ~ ③ (생략)</p>	<p>제2조(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u>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u>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u>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u>은 제외한다.</p> <p>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 5. (생략)                  ② ~ ③ (생략)</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및 20억원 이상인”을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20억원 이상인”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과 분리 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제2조(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과 분리 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 5. (생략)		4. ~ 5. (생략)		
② ~ ③ (생략)		② ~ ③ (생략)		